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4. 21 선고 2021가단105944, 2022가단100069(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대여금]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해

담당변호사 조정현, 김경룡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3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17.부터 2020. 4. 21.까지 아래와 같이 피고 C에게 합계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 C에게 수회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였다.

순번	대여일시	금액(원)
1	2019. 3. 17.	20,000,000
2	2019. 7. 10.	3,000,000
3	2019. 8. 16.	2,000,000
4	2019. 3. 8.	5,000,000
5	2019. 3. 24.	2,000,000
6	2019. 8. 19.	1,000,000
7	2020. 3. 18.	500,000
8	2020. 3. 19.	500,000
9	2020. 4. 21.	1,000,000
합계		35,000,000원

나. C은 2020. 1. 16.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처 피고 B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14.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3. 채권최고액을 37,400,000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21. 5. 18.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E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 최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위 특레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2020. 1. 16. 당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33,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 C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남편인 피고 C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피고 C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3. 채권최고액을 37,4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21. 5. 18.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피고 C에게 위 각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당시의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권홍

별지(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남도 의령군 동[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라브 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357.3m²2층 551.3m²3층 544.28m²4층 544.28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3층 호철근콘크리트구조 97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상남도 의령군 답 1986m²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1986분의 106.8645

